

2. 法人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總理令 第622號 1997. 3. 29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비인정되는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여 과세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영 제13조제4항제4호).
-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제지원 대상 주식매입선택권 중 당해 선택권 행사시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실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현금 지급액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주식 매입선택권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13조의 2 제3호).
- 다. 석유 등 위험물의 판매시설은 당해 시설의 특성상 임대시 10퍼센트이상 자가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임대전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
- 라.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접대비한도를 축소함(영 제18조의 2 제3항).

개 정 이 유

법인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중 “자기자본계산”을 “자기자본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0조”를 “영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7호 중 “종합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로,

“신용카드회사”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할부금융회사”로 하고, 동항제8호 본문중 “채권”을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제10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7조”를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단서중 “전출”을 “진출”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제13조의 2 제2호 중 “자본시장육성에관

한법률”을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제14조 본문중 “영 제36조제1항”을 “영 제3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 3의 제목중 “계산”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6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 4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88조의 2”를 “소득세법 제162조”로 한다.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37조의 2 제1항 제5호”를 “영 제37조의 2 제1항 제6호”로 한다.

제15조의 3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5조의 4 중 “영 제10조”를 “영 제10조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 5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2 본문 중 “영 제40조제1항”을 “영 제12조제1항제10호·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제1항”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7 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42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

- 립된 한국갱생보고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법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
 2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에너지관리공단
 2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27.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8.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9.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 의료법인
 30. 제1호 내지 제29호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② 영 제4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제18조제3항제19호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로 하고, 동조제18항중 “영 제43조의 2 제9항제10호”를 “영제43조의 2 제9항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법률 제3783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마.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조의 2의 제목 중 “외화수입금액 등”을 “접대비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65”를 “100분의 80”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 제9항중 “영 제43조제5항제1호”를 각각 “영 제43조제6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영 제43조제6항”을 “영 제43조

제8항”으로 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제21조제4항 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라 함은 시설대여업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인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

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업종별 기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동일한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별표 1 내지 별표 4를 말한다)별로 각각 구분(별표 2의 경우에는 다시 중분류기준에 의한 업종별로 각각 구분한다)하여 그 구분된 단위내에서의 동일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33조제2항중 “총당금 상당액”을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감가상각총당금”을 각각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가상각총당금 누적액”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다.

제43조중 “정부가 결정 또는 개정한”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개정한”으로 하고, “정부가”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0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2항중 “영 제124조의 10 제3항”을 “영 제124조

의 10 제5항”으로 한다.

28. 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

제46조의 2 제2항 중 “물납승인통지”를 “물납결정상황통지”로 한다.

제50조제1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

제57조제2항중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로 한다.

제57조의 2 제5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 3 제1항 중 “각 연도”를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 4의 제목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24조의 4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 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제59조의 8 제1항 본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1976년 12월 31일”을 각각 “198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30조의 2 제2항 제3호”를 “영 제130조의 2 제4항 제4호”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영 제1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로 한다.

② 영 제13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14(1)호서식(갑)·(을)에 의한다. 제6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4항중 “집계표”를 “법인세징수액집계표”로,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1)”로 하며, 동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25조 및 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는 별지 제

52호서식에 의한다.

⑨ 영 제10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6의 작성요령 제1호 본문 중 “중비금”을 “준비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단, 조감법 제16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투자 상당액 등 이자추징대상”을 “다만, 이자추징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7의 작성요령 제1호중 “제91조”를 “제123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 2 서식(갑)의 비고 ⑭ 세액감면란중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의 ⑦란 금액”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의 ⑤란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의 작성요령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수익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을 차감하여 기입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병)의 작성요령 제6호중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한다)사용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6-6(2)호서식중 “⑬ 감가상각충당금”을 “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고, “③③ 당기상각시인범위액(③②≤②⑧-①⑤-①⑨-②③-전기 ④②)”을 “③③ 당기상각시인범위액(③②, 단 ③②≤②⑧-①⑤-①⑨-②③+③⑨-전기 ④②)”으로 한다.

별지 제6-6(5)호서식중 “⑩ 회사계상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⑩ 회사계상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로 하고, “②③ 감가상각충당금누계액”을 “②③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며, 동서식의 작성요령 제1호 및 제3호중 “감가상각충당금”을 각각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하고, 제3호중 “충당금”을 “누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6-6(6)호서식중 “⑥ 감가상각충당금”을 “⑥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6-6(7)호서식중 “⑥ 감가상각충당금”을 “⑥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의 작성요령 제3호중 “취득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하기전의 금액)”을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⑦ 당기상각범위액란에는 정액법의 경우 취득일별 ⑤란의 금액을 ①란의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당해연도 하반기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동금액의 1/2)을 기입하고, 정율법의 경우 [(⑤란의 소계금액(당해연도 하반기

에 취득한 자산가액을 제외한 금액)
 -(직전연도 시·부인단위별 감가상
 각누계액총액)}×(신고내용연수에 의
 한 감가상각율)×

취득일별 자산가액-취득일별 ⑥란 금액
 ⑤란 소계금액(당해연도 하반기에 취득한
 자산가액을 제외한 금액)-⑥란 소계금액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작성요령 제5
 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작성요령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⑥의 자기자본은 명세서(을)의 6.
 자기자본 적수계산란중 ⑭란의 금액
 을 기입합니다.

11. ㉒·㉓란은 상단에 건설자금이자로
 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및 차입
 금적수를 각각 기입하고, 하단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
 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
 다.

12. ㉕·㉖란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
 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
 자 및 차입금적수를 각각 기입합니
 다.

별지 제6-14호서식(을)의 작성요령 제2
 호중 “부채총계”를 “부채(충당금을 포함
 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총계”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작성요령 제5호 나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제감면세액(㉒) : 직전 사업연
 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기입하
 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
 외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1)중 “⑧ 신용카드거래
 분”을 “⑧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 포함)거래분”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의 구분란 중 “원천징수
 납부할세액(신탁이익분배이외의 분)”을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으로, “⑨ 법인
 세”를 “⑨ 법인세 등”으로, “⑩ 법인세”
 를 “⑩ 법인세 등”으로 하고, 동서식의
 작성요령중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며, 동서식의 제3호중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분란”을 “소득세
 징수액집계표의 A71”란의 「5. 징수세액」
 란”으로 하고, 동서식의 작성요령에 제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액
 만 있는 신탁회사의 지점 등의 경우
 에는 본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
 다.

6. ⑧란이 납부(+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은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며, ⑧
 란이 환급(-인 경우에는 국제기본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⑨

란 금액의 범위내에는 총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⑩란에 기재하되 ⑧란의 환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⑩란의 금액은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의 「7. 조정한급세액」란 및 「10. 조정한급세액」란에 기재하여 조정한급합니다.

7. ⑨란에는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총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갑)의 작성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중 “부채총계”를 “부채(총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총계”로 한다.

2. ⑥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익금불산입금액을 가산하고, 동법 제24조의 3 제4항의 수입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을)의 작성요령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중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이익(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항의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①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은 명세서(갑)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란(⑥)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부표,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6-2(2)호서식, 별지 제6-2(3)호서식, 별지 제6-2(4)호서식, 별지 제6-2(6)호서식, 별지 제6-2(7)호서식, 별지 제6-2(9)호서식, 별지 제6-2(10)호서식, 별지 제6-2(12)호서식, 별지 제6-2(13)호서식, 별지 제6-2(14)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갑), 별지 제6-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갑), 별지 제14(1)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11)호서식(갑) 및 별지 제6-2(11)호서식(을)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6-2(11)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1항제8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결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 6 조(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7 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3·제59조의 4 및 제59조의 8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8 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회보